

---

#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

2018. 2.

#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정관과 상위법원(法源)인 지방공기업법의 「임원 결격사유」를 일치시키고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획’ 및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관련 노사합의서(’17.12.31)를 반영하여 서울교통공사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 1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정관) 제2호
-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관련 노사합의서(’17.12.31)
- 제2017-5회 이사회(2017.12.28.)
  -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 제2018-1회 이사회(2018.1.29.)
  - 서울교통공사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수정의결

## 2 추진내용

###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와 공사 정관 내용 불일치 해소
  - ※ 서울시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17.6) 반영
  - 현행 정관상 임원결격사유와 세부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상 결격사유와 불일치하여 개정이 필요(지방공기업법 제60조 결격사유 그대로 열거)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근로자이사만 해당)

□ 정관 <별표2> 개정 - <붙임2>참조

○ 정원증원 : 총 1,632명 증원

- 무기업무직 정규직(일반직) 전환: 총 1,455명
- 8개역 환수 : 91명
- 지하철보안관 충원 : 46명
- 환기설비용역 직영화 : 40명

○ 정원반영 : 정관 총정원표 조정

- 일반직 증원 : 15,639명 → 17,271명(+1,632명)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현 행	15,639	45	198	1,357	14,039
조 정	17,271	45	198	1,357	15,671
증 감	+1,632	-	-	-	+1,632

□ 시행절차



- 붙임 : 1.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정규직(일반직) 전환 추진계획(안) 1부.  
 3. 제2017-5회 이사회의결서 1부.  
 4. 제2018-1회 이사회의결서 1부.  
 5. 지방공기업법·서울교통공사정관(개정전) 「임원의 결격사유」 비교  
 (참고자료) 1부. 끝.

##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u></li> <li>2.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u></li> <li>3.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li> <li>4.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li> <li>5. <u>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li> <li>6. <u>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u></li> <li>7. <u>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u></li> <li>8.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근로자이사만 해당)</li> </ol> <p>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li> <li>2.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li> <li>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근로자이사만 해당)</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현행

<별표 2>

### 정원표(제26조 관련)

가. 총괄표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15,674	6	15,639	29

※ 4년간 단계별로 조정한다.(1,029명 단계별로 감축하여 2020년 14,645명으로 한다.)

나. 일반직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5,639	45	198	1,357	14,039

다. 청원경찰 : 29명

## 개정(안)

<별표 2>

### 정원표(제26조 관련)

가. 총괄표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17,306	6	17,271	29

※ 4년간 단계별로 조정한다.(1,029명 단계별로 감축하여 2020년 16,277명으로 한다.)

나. 일반직

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17,271	45	198	1,357	15,671

다. 청원경찰 : 29명

【붙임 2】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 정규직(일반직) 전환 추진계획(안)

## 목적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획’ 및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관련 노사합의서(’17.12.31)를 반영하여 정규직(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 1 추진근거

- 시장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 기자설명회(’17.7.17)
  - 11개 투자(출연)기관 업무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17.8.30)
  - 유사·동종업무 → 기존 직군통합 / 상이업무 → 직군(직렬) 신설
-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관련 노사합의서(’17.12.31)

## 2 무기업무직 운영현황

- 일반업무직(8직무), 안전업무직(6직무)

※ 업무직관리규정 등을 통해 정원, 인사, 예산, 급여 등 일반직과 따로 관리

[2017.12.31.기준]

구분	합계	일반업무직 (정원 457 / 현원 436)								안전업무직 (정원 998 / 현원 852)					
		식당 찬모	목욕 탕	이용 사	면도 사	세탁 소	매점	지하 철보 안관	운전 기사	승강 장안 전문	전동 차검 수지 원	역무 지원	구내 운전	모타 카및 철도 장비	궤도 보수 원
정원	1,455	117	10	12	6	1	5	304	2	381	319	13	90	176	19
현원	1,288	109	8	11	6	-	5	295	2	362	303	6	56	106	19

### 3 추진경과

- 노사회의체(TF) 구성('17.9.12.) : 총10인(노측 5인 · 사측 5인)
- 노사협의 : 총 7회 개최('17.9.15~12.28)

※ 주요 논의사항

- 직군·직렬·직종체계 : 유사·동종 업무 → 기존 편입 / 이질적 업무 → 신설
- 직급체계 : 서울시 지침에 의거 기존 직급 편입, 신설 등 다양한 직급체계 논의
- 임금체계 : 개인별 임금 총액 적용(호봉 재산정 등)
- 정원확대 : 총 1,455명(무기업무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력증원)
- 추가인력 증원 : 8개역 환수, 지하철보안관 충원, 환기설비용역 직영화 등 추가인원 검토

- 내부의견 수렴(CEO) ⇒ 내부 갈등 해소 노력

대상	일시	주요 요구 사항
무기업무직(6명)	'17.9.26	· 차별없는 정규직화 주장 ※ 하위직급 신설 및 승진유예 반대 등
청년모임(5명)	'17.10.20	· 합리적인 정규직화(기회평등, 절차공정) 주장

- 노사합의서 체결('17.12.31)

### 4 추진방향

- 전환원칙 → 일반 및 안전업무직 전원 일반직 정원내 인력으로 운용
- 직군(직렬, 직종) 체계 → 직무내용 반영하여 기존 체계 편입 및 신설
- 직급체계 → 정규직(일반직) 직급체계에 별도(7급 보) 운영(한시적)
- 임금체계 → 현 개인별 임금총액(실적급 제외)을 반영하여 재설계
- 근무형태 → 변경시 인력증원 없이 업무특성 반영하여 재설계 가능

## 5 세부 추진계획

### 1 전환원칙

- 전면전환 : 무기업무직(일반·안전)의 정원을 정규직 정원내 인력으로 증원
- 전환시기 : 2018.3.1.일자 정규직(일반직) 일괄 전환

근무기간	전 환
3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급 임용</li> </ul>
3년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급보(補) 한시적 배치</li> <li>• 근무기간 3년 경과시 익월 1일자로 7급 임용</li> <li>* 단, 3년 미만인 자 대상으로 별도 직무교육(역량평가) 통해 7급 임용기회 부여</li> </ul>

※ 근무기간 : 무기업무직 입사년도 또는 전환년도 기준

- 전환방법 : 제반 규정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채용
  -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
  - 전환자 사원번호는 현재 사번 유지

### 2 직군, 직렬 및 직종체계

- 직 군 : 무기업무직 모든 직종은 일반·특수 직군 편입

기존	변경	비고
사무직군	일반직군	1개 직군 축소
기술직군		
특수직군	특수직군	

※ 기존 정규직(일반직)도 2개 직군으로 재분류



□ **직렬/직종** : 직무특성에 따라 ①기존 편입 또는 ②신설(통합)

○ **안전업무직** → 일반직(4직종 편입 + 2직종 신설)

- 직종 편입 : 기존 4직종(전동차검수지원 → 차량 직종 등) 편입

- 직종 신설 : 신규 2직종(승강장안전문 → 승강장안전문 직종 등) 신설

직무	정원	설계내용			비고
		직군	직렬	직종	
전동차 검수지원	319	일반	차량	차량	· 기존 편입
구 내 운 전	90	일반	승무	승무	
역 무 지 원	13	일반	사무	사무	
모타카 및 철도장비	176	일반	기술	궤도	
궤 도 보 수 원	19	일반	기술	궤도	· 직종 신설
승강장안전문	381	일반	기술	승강장안전문	
지하철보안관	304	일반	지하철보안	지하철보안	· 직렬(직종) 신설

※ 지하철보안관 → 안전업무직에 포함(1~4호선 '16 노사합의서 반영)

○ **일반업무직** → 특수직(1직종 편입 + 1직종 통합)

- 동종(유사) 직무 → 기존 특수직종과 편입

▶ 운전기사(일반업무직) + 자동차운전(특수직) → 자동차운전(특수직)

- 후생관련 직무 → 통합 신설(후생지원직)

▶ 이용사, 식당찬모, 목욕탕, 면도사, 세탁소, 매점(일반업무직) → 후생지원(특수직)

직무	정원	설계내용			비고
		직군	직렬	직종	
운전기사	2	특수	특수	자동차운전	· 기존 편입
식당찬모	117	특수	특수	후생지원	· 직군 · 직렬 : 기존 편입 · 직종 : 통합 신설 배치
이 용 사	12	특수	특수		
목 욕 탕	10	특수	특수		
면 도 사	6	특수	특수		
세 탁 소	1	특수	특수		
매 점	5	특수	특수		

※ 영양조리(특수직) → 영양+조리(후생지원직종) 분리

환경(특수직) → 기술직렬(기계직종)으로 조정

### 3 임금체계

현 개인별 임금총액(실적급 제외)을 저하없이 반영

근무기간	구 분	임금체계 적용
3년이상	• 정규직 7급 1호봉 임금총액 상회	개인별 임금 총액에 맞는 호봉 부여
	• 정규직 7급 1호봉 임금총액 미달	별도 호봉급 체계 신설 ※ 7급 1호봉 임금총액 도달시까지 한시적 운영
3년미만	• 개인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별도 7급보(補) 임금체계 마련 및 적용	

### 4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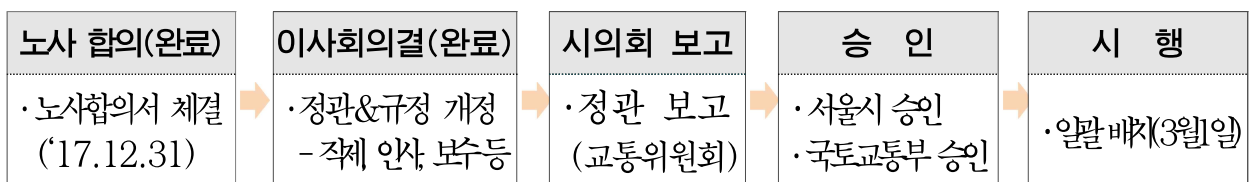
근무형태 변경은 인력증원 없이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재설계

### 5 정원증원

4개분야 총 1,632명 증원

대상	인원	관 련 근 거
계	1,632	-
무기업무직	1,455	▶ 업무직 관리규정 별표 2(업무직 정원표)
8개역 환수	91	▶ (구)서울메트로 제2016-6회('16.6.17) 이사회 의결 ▶ (구)서울메트로 제2016-7회('16.7.11) 이사회 의결
지하철보안관 총 원	46	▶ '14년 서울시장 공약사항 “교통안전망 업그레이드 시책사업 준수”
환기설비용역 직 영 화	40	▶ (구)서울메트로 제2008-11회('08.12.23) 이사회 의결 ▶ 외주용역 직영화 관련 역사환기설비 운전점검 용역 직영('11.4.22)

### 6 추진절차



끝.

## 제2017-5회 이사회(정기회) 의결서

일 시	2017. 12. 28.(목) 15:00 ~ 18:10	장 소	스마트안전통합상황실 (본사 5층)
소집자	의 장 김상범		
출 석 이 사	1. 이 사 김태호    2. 이 사 김석태    3. 이 사 한재현 4. 이 사 최정균    5. 이 사 이원목    6. 이 사 이대현 7. 이 사 조중래    8. 이 사 박윤배    9. 이 사 나상운 10. 이 사 이진선    11. 이 사 김미란    12. 이 사 박희석 13. 이 사 박원준		
결석이사			
참 여 자	법무처장, 총무처장, 급여복지처장, 예산처장, 기획처장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소관부서	의결결과
제15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법무처	원안의결
제16호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총무처	원안의결
제17호	자산(토지) 재평가 결과 반영(안)		원안의결
제18호	유형자산 내용연수 일원화(안)		원안의결
제19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급여복지처	원안의결
제20호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21호	2018년도 예산편성(안)	예산처	수정의결
제22호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안)	기획처	수정의결
제23호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 의결주문

- 제15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16호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17호 "자산(토지) 재평가 결과 반영(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18호 "유형자산 내용연수 일원화(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19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20호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21호 "2018년도 예산편성(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한다.
  1. 수입예산은 3조4,077억6천6백만원에서 202억7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3조4,280억 4천만원으로 한다.
    - 수입예산 중 출자금은 승강편의시설 확충 167억원, 캐노피 및 출입구 신설 9억원, 선도테마역사 조성 9억원, 마장역 환기구 개선 2억원, 도봉산역 방음벽 철거 4천만원,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17억원, 지하철 역사 차열페인트 시범시공 3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노후시설 개선 18억원과 창동역 노후 연결통로 환경개선에서 10억원을 감액한다.
    - 장기차입금은 6,671억 6천3백만원에서 22억 7천4백만원 증액한 6,694억 3천 7백만원으로 한다.
  2. 지출예산은 세출3조 4,077억 6천6백만원에서 202억 7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3조 4,280억 4천만원으로 하고, 채무 2,055억 1천3백만원에서 14억 3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2천40억 7천9백만원으로 한다.
    - 지출예산 중 출자금 관련 사업비 조정으로 이동편의시설 확충 167억원, 캐노피 및 출입구 신설 9억원, 선도테마역사 조성 18억원, 마장역 환기구 개선 2억원, 도봉산역 방음벽 철거 8천만원,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34억원, 지하철 역사 차열페인트 시범시공 3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노후시설 개선 21억 6천6백만원과 창동역 노후 연결통로 환경개선 10억원을 감액한다.
- 제22호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안)"은 수정의결된 예산편성(안)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한다.
- 제23호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 연서 날인함.

2017년 12월 28일

의	장	김 상 범 (인)
이	사	김 태 호 (인)
이	사	김 석 태 (인)
이	사	한 재 현 (인)
이	사	최 정 균 (인)
이	사	이 원 목 (인)
이	사	이 대 현 (인)
이	사	조 중 래 (인)
이	사	박 윤 배 (인)
이	사	나 상 윤 (인)
이	사	이 진 선 (인)
이	사	김 미 란 (인)
이	사	박 회 석 (인)
이	사	박 원 준 (인)
위 결의를 확인함.	감	사 정 회 윤 (인)

## 제2018-1회 이사회(임사회) 의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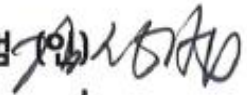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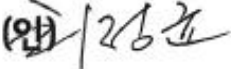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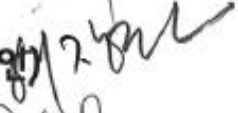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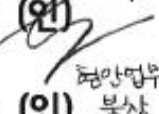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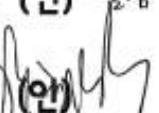



일 시	2018. 1. 29.(월) 14:00 ~ 15:55	장 소	스마트안전통합상황실 (본사 5층)
소집자	의 장 김상범		
출 석 이 사	1. 이 사 김태호    2. 이 사 김석태    3. 이 사 한재현 4. 이 사 최정균    5. 이 사 박대우    6. 이 사 여장권 7. 이 사 조중래    8. 이 사 박윤배    9. 이 사 나상윤 10. 이 사 이진선    11. 이 사 박희석    12. 이 사 박원준		
결석이사	김미란 이사		
참 여 자	기획처장, 급여복지처장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소관부서	의결결과
제1호	서울교통공사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기획처	수정의결
제2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급여복지처	원안의결
제3호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4호	연봉제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5호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 의결주문

- 제1호 "서울교통공사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은 정원증원 총 1,665명 중 7호선 연장구간 시격단축 관련 인력 총원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1,632명을 정원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7호선 연장구간 관련 인력 총원 33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한다.
- 제2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3호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4호 "연봉제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 제5호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원안의결" 한다.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 연서 날인함.

2018년 1월 29일

의 장	김 상 범 (인)		
이 사	김 태 호 (인)		
이 사	김 석 태 (인)		
이 사	한 재 현 (인)		
이 사	최 정 균 (인)		
이 사	박 대 우 (인)		
이 사	여 장 권 (인)		
이 사	조 중 래 (인)		
이 사	박 윤 배 (인)		
이 사	나 상 윤 (인)		
이 사	이 진 선 (인)		
이 사	김 미 란 (인)		
이 사	박 회 석 (인)		
이 사	박 원 준 (인)		
위 결의를 확인함.	감 사	정 회 윤 (인)	

【붙임 5】

○ 지방공기업법·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전) 「임원의 결격사유」 비교(참고자료)

지방공기업법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전)
<p>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lt;개정 2015.12.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li> <li>2. 미성년자</li> <li>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ol>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5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u>2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li> <li>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u>2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u>2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u>5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u>3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u>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u>2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 삭제 &lt;2015.12.15.&gt;</li> </ol>	<p>제17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li> <li>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li> <li>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2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5. <u>법에 위반하여</u>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li> <li>8.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근로자이사만 해당)</li> </ol>